

【건설교통부, 건설업자 실태조사 시행 및 부실업체 처분 지침 확정】

건설교통부는 지난 3월 27일 시·도 건설담당과장 회의를 열어 부실업체 실태조사 요령 및 처분지침을 확정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했다. 이에 따라 부실업체 실태조사가 4월 16일부터 지방자치단체별로 일제히 실시된다.

이번 지방자치단체에 시달된 지침에 따르면 지자체와 관련협회 합동으로 조사반을 구성하여 4월 16

일부터 3단계에 걸쳐 시·도별로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매월말 조사결과를 중간 집계해 건설교통부에 제출하게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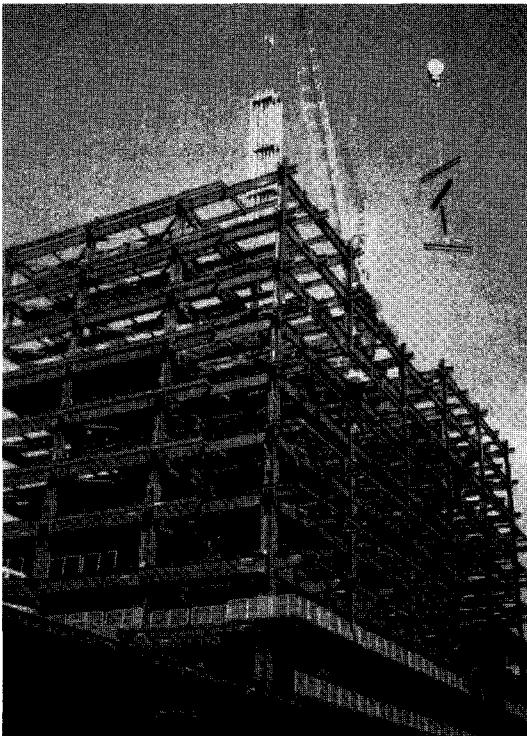
건설교통부는 1단계로 재무제표 및 기술인력현황표,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등 서면조사 후 등록기준에 미달된 업체를 발급하는 한편 협회에 설치된 부실업체 신고센터에 건설업등록증 대여 및 불법하도급 등으로 신고된 업체를 조사대상으로 선정하기로 했다.

또 2단계로는 사무실, 장비 등 등록기준 위반업체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3단계 청문절차 후 행정처분하기로 했다.

■ 부실업체 실태조사지침

△ 조사방향

부실업체를 퇴출시켜 건설시장입찰 등 질서확립 및 공사품질을 확보한다. 이를 위해 구조조정 차원에서 건설업체를 감독해 등록기준에 미달한 업체를 철저히 색출·제재 조치한다. 또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사항이 있어도 처벌한다.



△ 추진계획

합동조사반을 구성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여 세부조사계획을 수립한다. 협회(일반·전문·설비)는 자치단체 요청시 업무 또는 인력을 지원하며, 조사완료 후 우수기관에 대해 장관표창을 수여할 예정이다. 실태조사는 4월 16일부터 3단계에 걸쳐 시·도별로 추진하며, 매월말 조사결과를 중간 집계해 익월 5일까지 제출한다.

1) 1단계 : 서면조사(재무제표, 기술인력현황표,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등) 후 등록기준에 미달한 업체를 발굴한다. 또 협회에 설치된 부실업체 신고센터에서 건설업등록증 대여, 불법하도급 등 신고 접수 조사대상으로 선정한다.

2) 2단계 : 필요할 경우 등록기준(사무실, 장비) 위반업체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3) 3단계 : 청문절차 후 행정처분을 시행한다.

△ 조사내용

1) 기술자 및 경력임원 확인 : 기존업체는 등록기준상 지난 2월 25일까지 기술자 1인을 증원해야 한다. 겸업업체는 지난 2월 27일부터 건설기술자 중복이 불인정되며, 등록기준상 기술자와 경력임원 보유 여부를 건설기술인협회의 업체별 건설기술자 자료와 업체로부터 제출 받은 국민연금, 의료보험 납부자료 등을 이용하여 확인한다.

2) 자본금의 확인 : 기존업체는 등록기준상의 자본금을 확보해야 하며, 겸업업체는 지난 2월 27일부터 자본금 중복이 불인정된다. 관할 세무서에 제출된 재무제표 또는 외부감사를 행한 공인회계사가 검사한 재무제표를 통해 확인한다. 겸업업체일 경우는 4월 15일까지 제출한 지난해 12월 31일자 재무제표상 자본금이 등록기준에 미달할 경우 재확인한다.

3)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구비 확인 : 신규 및 기존 업체를 불문하고 3월 25일까지 조합에서 보증가능

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제출했는지 확인한다.

4) 시설 및 장비의 확인 : 등록기준상 사무실 기준 면적의 신설사항과 장비 확보를 확인한다. 사무실은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물사용계약서, 기타 사무실 보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확인하고 장비 중 건설기계 관리법 기타 법령의 적용을 받는 장비는 자기 소유로 등록된 것이어야 한다.

△ 행정처분기준

1) 등록말소처분 : 자본금을 위장 납입하거나 기술자 또는 경력임원을 위장 고용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건설업의 등록을 한 때 등록말소 처분한다. 또 지난 2000년 9월 1일 이후 등록기준미달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는 등록말소 또는 1년 이내의 영업정지를 취한다. 영업정지기간 중 등록기준을 갖추었다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영업을 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도 등록말소 처분한다.

2) 영업정지처분 : 등록기준에서 정한 서류를 기간 내 제출하지 못한 경우는 영업정지 처분한다. 영업정지기간은 6개월을 원칙으로 하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가중 또는 감경하도록 한다. 경감 사유를 보면 최근 3년 이내에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거나 등록기준의 기술능력·자본금·시설·장비 및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중 1개 항목만을 갖추지 못한 경우이며 자본금 미달금액이 등록기준액의 10% 이하이거나 청문 시점까지 등록기준 보완 등이다. 가중 사유는 등록기준의 기술능력·자본금·시설·장비 및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중 3개 이상의 항목을 갖추지 못한 경우이다. 등록기준(자본금 제외) 미달 기간 6개월 초과, 기술자를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거나 등록기준의 3분의 1 이하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 등이다.